

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27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(변경 없음)
 - 가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 없음)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(변경 없음)
 - 가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 - 나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■ 단독주택용지(B용도)(변경)

기 정				변 경					
가구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가구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위치	면적 (㎡)				위치	면적 (㎡)	
37	7,525.0	1-1	181.0		37	7,525.0	1-1	181.0	
		1-2	184.1				1-2	184.1	
		1-3	188.9				1-3	188.9	
		2	1,239.3				2	1,508.2	
		4	328.0				4	328.0	
		5	155.2				5	155.2	
		6-1	264.7				6-1	264.7	
		6-2	264.3				6-2	264.3	
		6-3	264.1				6-3	264.1	
		6-4	264.1				6-4	264.1	
		6-5	264.6				6-5	264.6	
		7	199.0				7	199.0	
		8	319.1				8	319.1	
		9	270.7				9	270.7	
		11	233.4				11	233.4	
		12	351.2				12	351.2	
		13-1	433.3				13-1	433.3	
		14	979.6				14	979.6	
15	171.8		15	171.8					
16-1	326.3		16-2	408.4					
16-2	351.0		17	170.5					
17	170.5		18	120.8					
18	120.8								

■ 변경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37	2, 16-1, 16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획지변경(분할 후 합병) 16-1획지(326.3㎡)폐지 후 2획지(1,508.2㎡) 및 16-2획지(408.4㎡)로 분할합병 ※ 2획지(증268.9㎡), 16-2획지(증57.4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획지의 형상을 정형화하여 마당 및 조경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(획지의 면적 변경만 있으며 기존건축물 이외의 별도의 건축계획 없음)

- 나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 없음)
- 다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(변경 없음)
- 라) 건축물의 용도·형태·배치 등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
 -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III. 열람 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032-560-4763, 서구 서곶로 307)

IV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